

 국토교통부	보도자료		
	배포일시	2020. 9. 9(수) / 총 2매(본문 2매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	담당자	• 과장 김경현, 사무관 육인수, 주무관 이상직 • ☎ (044) 201-3369, 3370
보도일시	2020년 9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9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빈 오피스·상가,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
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’(20.8.4.)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*가 오피스·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(20.9.9.~20.9.16.)한다고 밝혔다.

*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·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(‘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’, 20.5.6.)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지난 5.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(20.7.20.~8.19.)한 개정안은 오피스·상가·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,
- 「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」(8.4대책)에서 용도변경(오피스·상가 → 임대주택)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.

- 다만,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* 한다.

*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(8년),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(소득 등) 제한 가능

□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현 과장은 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·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,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”된다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전화: 044-201-3369, 3370, 팩스 044-201-5684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육인수 사무관(☎ 044-201-336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